

손해보험회사들이 취급하는 신상품 소개

● 안국화재

새시대종합보험 - 매달 3만원대의 보험료로 사고시 최고 1억4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사망·후유장해는 물론 치료비, 입원일당이 지급되며, 만기시에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톱 드라이버보험 - 본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으며, 만기 환급률을 대폭 개선하여 계약시 선택의 폭을 넓혔다.

● 현대해상

부부교통상해보험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입원 치료비, 간병비외에 결혼기념일 축하금, 건강진단비, 만기환급금 지급 등 활동시기의 보상을 강화한 상품이다.

새현대인 상해보험 - 3인 이상 단체로 가입이 가능하며, 10인 이상 가입시 보험료의 할인 혜택이 있다. 모든 상해를 보상하며 만기시 불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 럭키화재

건강종합보험 - 암 등 각종 질병을 비롯해 상해사고·주말 교통사고·평일 교통 사고 등을 보상한다. 특히, 평일 교통 사고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3배액을 보상하며, 정기적인 건강 진단을 위해 정기 건강 진단 비용도 지급한다.

● 동양화재

운전자 안심보험 -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하는 적립형 보험으로서 운전중은 물론 일상 생활중의 생해·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및 생활 유지비·벌금·소송비용까지 보상한다.

웨이리 종합보험 - 교통상해외에도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경스포츠·취미·레저 또는 숙박을 포함한 여행중의 상해를 보상해준다.

● 신동아화재

새신동아종합보장보험 -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도난 사고에 대한 보상외에 증권 하나로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상해 사고를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2배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 대한화재

적립형 대한종합보험 - 기존의 장기화재 및 장기종합보험의 담보영역을 확장해 화재는 물론 일반상해·배상 책임 위험까지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한다.

● 국제화재

OK 주말상해보험 - 토·일요일 및 공휴일 등 주말에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생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억원, 치료비의 경우 5백만원까지 보상한다.

● 고려화재

한마음상해보험 -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배까지 보상하며, 암 등의 질병까지 보상한다.

● 제일화재

클로버 가정생활보험 - 가정 생활과 관련된 각종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한다. 또한 상해·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까지 보상하며, 전세 입주자는 가재만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는 건물에 대해서만 추가 가입을 할 수도 있다.

● 해동화재

적립형 다이드상해보험 - 교통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의 5배까지 보상을 하며, 계약후 2년마다 보험금을 지급, 건강 진단 자금이나 자동차 검사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피서지에서의 교통사고 보험대책

(보험사 심야보상 서비스)

회사명	서비스명	전화 (서울)
동양 신동아	TELEBOY 24시 자동차보험 심야 보상서비스	774-7711 771-6900
대한 국제 고려 세일	HOT Line 24시 심야보상 서비스 DRAGON 25시 야간보상서비스 센터	754-6234 753-1101 736-4254 771-7300
해동 안국	심야보상서비스 MIDNIGHT EXPRESS	363-2611 776-7114
현대	안심페트롤	(080) 023-5656
럭키	24시간보상 서비스	310-2114
사보	티코24시	(080) 233-1234

우선 떠나기전에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영수증과 자동차 검사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가입 보험 회사의 지점 전화번호·스프레이·카메라·메모지 등을 챙겨야 한다.

특히 책임보험 영수증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사고시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꼭 필요하므로 항상 차에 비치해 두는게 좋다. 일단 사고가 나면 사고 장소에 즉시 멈춰 스프레이로 가해 및 피해 차량의 위치를 표시해 둔다.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제2의 사고 방지를 위해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며, 주위 사람에게 협력을 구한다.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해두면 뒤에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또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운전면허·차량등록번호·가입 보험 회사 이름 등을 확인하고, 승객이나 목격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 응급 조치한 다음 증상이든 경상이든 무조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뺑소니로 물리거나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신고 시한은 경찰서가 있는 곳은 사고 발생 3시간내, 경찰서가 없는 곳은 12시간 이내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정지가 부과된다.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잘못이 크다고 해서 무턱대고 손해 배상을 약속한다든가, 상대방에게 면허증이나 검사증을 넘겨줘서는 안된다. 이럴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떠맡게 돼 불필요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사고 처리에 대한 책임은 보험 회사에 일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과실 비용은 보험 회사에서 책정토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고가 발생하면 즉

시 가입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자문을 받는게 바람직하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회사가 다를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회사에만 신고하면 책임보험까지 처리해 준다.

차량 파손과 관련, 정비 공장을 선택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몫이다. 다만 보험 회사와 상의없이 사고 차량을 다른 지역 정비 공장으로 견인시킨 경우에는 견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므로, 사고 지역 부근 정비 공장에서 수리하는 것이 좋다. 또 교통 사고가 발생한뒤 보험 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 처치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 반드시 현지에서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래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입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는 보험 회사의 현장 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수리비 현장 지급 한도는 지난 4월1일부터 1백만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현장에서 수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고후 일단 차량을 가까운 곳에 대피시켜 놓고 보험 회사에 연락한다. 출동한 보험 회사의 직원이 사고 부위를 확인한 후 견적 금액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데, 피해자에게 동의하면 수리비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수리 전에 보험 회사 직원의 사고 부위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점이다. 이미 수리를 해놓은 상태면 사고 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장 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